

행정적 노인연령 조정 (자활근로 연령/연금 수급 연령 상향화를 중심으로)

수행과제명 : 남녀노인의 세대갈등 현황 및 세대통합 방안연구

과제책임자 :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53, e-mail : lsy4026@kwidimail.re.kr

요 약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의 기준 연령도 변화할 필요가 있음. 행정적으로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되어있으나 이제 생산주체로서 간주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로 되어있는데 이를 68세나 70세로 상향조정하여 근로능력이 있으나 수입이 없는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이 되는 연령 기준은 시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회환경에 맞추어 행정적 노인연령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노인의 행정적 연령은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 국민연금법에는 노령연금 수급기준을 60세로,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현행 60세나 65세를 노인기의 시작

으로 하면 노년기가 너무 길어지게 됨. 행정적으로 노인이 되는 것은 한편으로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돌봄의 대상이 되고 다른 편으로는 연금이나 교통비 같은 복지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것임.

- 65세부터 노인으로 간주되면서 자활근로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생활기반이 없는 노인의 경우 오랫동안 생활고에 시달리게 됨.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노인형 일자리로 월 20만원 급여를 7개월 동안만 지급하여 현실적인 생활보장책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자활근로 같이 생활대책이 되는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연령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반면에 60세부터 연금수급을 시작하게 되면 연금수급기간이 길어서 국가 예산이 부담을 주게 됨. 따라서 행정영역에 따라 노인이 되는 연령을 적절히 조정하여 노인의 복지와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전반적으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자활근로 연령
- 현재 기초생활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자활근로의 자격은 65세까지임. 자활근로 자격을 68세 혹은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면 생활대책이 없는 노인 중 아직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음.
- 현재 기초생활대상자로 한정되어 있는 자활근로 자격을 65세 이상인 경우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나이가 들수록 재산이 줄어드는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연금수급 등 복지혜택 적용 연령

- 현재 60세로 되어있는 국민연금개시연령도 65세로 상향조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소진을 예방함. 또 65세로 되어있는 교통비 지원도 상향조정함. 혹은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은 65세로, 고소득층은 그 70세로 하는 등 기준 연령을 차등화하는 방법도 있음.
- 그러나 이 경우는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경우이어서 당사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3. 정책효과

- 특정 수입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소극적인 복지의 대상이 아닌 생산활동의 주체로 간주하게 되어 이들의 자존감과 생활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음.
- 기초생활대상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넉넉지 않은 65세 이상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
- 교통비 지급과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춤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소진을 예방함.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 관계부처 : 행정안전부(성과후생관)
